

1. 개정이유

「공소청법」의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됨에 따라 규칙의 제명과 기관 명칭·용어를 정비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 처분지휘가 폐지되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219조 후단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을 요청받았을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및 기관 명칭·용어 정비(제명, 제1조, 제2조 제6호, 제5조 제2항, 제3항,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6항,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3항,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1조, 제70조, 제72조 제2항, 제7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6조 제1항, 제2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1항, 제2항, 제82조 제5항, 제83조, 제84조 제1항·제2항 및 제85조)

나.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 처분지휘권을 전제로 한 규정 정비(제23조 제1항 제3호의2, 제47조 제2항, 제72조 제1항 제2호 및 제86조)

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을 요청받았을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의 규정(제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 제2항)

라. 그 밖의 일부 문구 정비 등(제40조 제2항, 제62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71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환가지휘서·견적서·매수서”를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제시서·견적서·매수서”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소속검찰청”을 “소속공소청”으로 한다.

제14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를 “검사에게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로 한다.

제34조제6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검찰실무자료”를 “공소청실무자료”로,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찰실무자료요지서”를 “공소청실무자료요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을 “공소청의 관할구역안”으로,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별지 제25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검찰청 관할구역안”을 “공소청 관할구역안”으로,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소속검찰청명”을 “소속공소청명”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후단 중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를 “그 뜻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처분검찰청”을 “처분공소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검찰항고”를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다른 검찰청에의 이송)”을 “(다른 공소청에의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찰청의”를 “공소청의”로, “소속검찰청”을 “소속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의”를 “공소청의”로, “소속검찰청보관 또는 검찰청외”를 “소속공소청보관 또는 공소청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공소청의 검사에게 사건”으로, “원검찰청”을 “원공소청”으로 한다.

제61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전단 중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동법 제133조”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3조”로 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중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0조제2항·제3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에”를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30조제2항·제3항에 준하여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지휘)”를 “(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19조 단서에 따라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물처분지휘부”를 “제219조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압수물처분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수사요청을”을 “재수사요구를”로, “압수물처분지휘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을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제시를 보류할”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검찰청외 보관 증거물”을 “공소청외 보관 증거물”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을 “(압수물의 다른 공소청 보관 이송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검

찰청의”를 “공소청의”로, “검찰청 또는”을 “공소청 또는”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전단 중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를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30조제1항에 준하여”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압수물처분지휘”를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의”를 “공소청의”로, “검찰청소속”을 “공소청소속”으로, “촉탁검찰청”을 “촉탁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검찰청”을 각각 “소속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촉탁검찰청”을 “촉탁공소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 관할구역”을 “공소청 관할구역”으로, “검찰청검사”를 “공소청검사”로 한다.

제78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79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의 검사는”을 “공소청의 검사는”으로, “소속검찰청”을 “소속공소청”으로, “검찰청의 검사에게”를 “공소청의 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82조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83조 전단 중 “소속검찰청”을 “소속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의 장은”을 “공소청의 장은”으로, “검찰청의 장에게”를 “공소청의 장에게”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특별절차)”를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특별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검찰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고등검찰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6조의 제목 “(내사사건등의 압수물 처리)”을 “(진정사건등의 압수물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내사·진정·수사·시정”을 “진정·시정”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의 처분명령요지란 중 “몰수·집달관에 집행명령”을 “몰수·집행관에 집행명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란 중 “검찰실무자료 요지서”를 “공소청실무자료요지서”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압수물처리지휘부”를 “사법경찰관의 압수물처분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중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수물 처리절차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등)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및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검찰압수물사무규칙</u>	<u>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u> 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공소청법</u> 」 제58조에 따라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경찰서등”이란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u> ,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 등 <u>검찰청 외의 수사기관</u> 으로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는 관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u> ----- ----- <u>수사기관</u> ----- -----.
제4조(압수물의 수리) ①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경찰서등에서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하려는 경우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의 압수물 총목록 및	제4조(압수물의 수리) ① ----- ----- ----- ----- -----

압수조서 등과 그 압수물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번호를 부여하여 수리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환가지 회서·견적서·매수서 등 구매관계서류를 추가로 대조·확인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다른 검찰청으로부터의 이송 또는 환부촉탁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당해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 또는 환부촉탁한 검찰청에서 전산망을 통한 확인 등 다른 방법으로 압수물의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압수물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한 때에

----- 압수물 처분에 관한 의견제시서·견적서·매수서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소청 -----

공소청-----.
-----공소청-----

-----.

③ -----
공소청 -----

는 그 사실을 해당 관서에 통지
해야 한다.

제9조(압수물꼬리표·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 ① 압수물사무 담당직원은 압수물(환가대금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꼬리표에 압제번호·증제번호 등을 적어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압수물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증제번호·피의자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청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일 때는 압수물꼬리표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청·사건번호·피의자성명 및 죄명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①
검사로부터 가환부된 압수물에

_____.

제9조(압수물꼬리표·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 ① -----

공소청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①

관하여 제출명령이 있거나 피가 환부인 이외의 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검찰청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수리절차를 취하고, 종전의 증제번호를 그대로 부여하되 압수표가 당해연도 이전에 작성 정리된 것인 때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이미 정리된 압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
수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
른 검찰청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사
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
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
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소속공소청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
수리) -----
-- 공소청-----

제23조(압수표의 처분명령 기재)

⑥ 검사는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취급은행이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폐기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7조(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① 검사는 검찰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대검찰청에 인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검찰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①

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0조(몰수의 집행) ① (생략)

②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⑥ -----
--- 공소청-----

-----.

제37조(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①---- 공소청실무자료-----

---- 공소청-----
-----.
----- 공소청실무자료요지서-----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①--

----- 공소청의
관할구역안-----
-- 관할공소청-----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몰수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는 별지 제25서식에 의한
몰수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
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1조(몰수의 집행촉탁) ①검사
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 관할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4조(위조·변조된 몰수부분 표
시) ①검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위조·변조의 표시를 하
고 판결연월일·판결법원·사
건명과 몰수의 뜻을 부기하고,
소속검찰청명과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
인해야 한다.

② (생략)

제47조(소유권포기)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 별지 제25호서식-----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몰수의 집행촉탁) ①----
----- 공소청 관할구
역안-----
관할공소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위조·변조된 몰수부분 표
시) ①-----

소속공소청명-----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소유권포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그 뜻을 기재함으로
써 소유권 포기서를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으며, 진술서 그 밖
에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
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기재된
때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경찰서등의 장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
사에게 촉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
의사 조사촉탁서에 의한다. 소
유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
게 촉탁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3조(환부의 촉탁) ①검사는 다
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경찰서
등의 장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
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

----- 그 뜻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

-----.

③-----

----- 공소청-----

-----.

-----.

제53조(환부의 촉탁) ①-----
-- 공소청-----

-----.

도 촉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4조(환부의 공고) ①·② (생략)

③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와는 별도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처분검찰청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6조(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 환부) ①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사건에 대한 검찰hang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 환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7조(다른 검찰청에의 이송) ① 검사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에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소속검찰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치할 수 있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환부의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처분공소청 -----

-----.

제56조(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 환부) ①-----

--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hang고 -----
-----.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다른 공소청에의 이송) ①

----- 공소청의 -----

----- 소속공소청 -----

-----.

②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에 압수물의 송부, 소속검찰청보관 또는 검찰청외 보관의 구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의 송부없이 사건 송치를 받은 검사가 다시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사건이송통지서에 의하여 원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61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등에 의하여 사건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2조(기소중지처분 · 참고인 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 ① (생략)

②-----
--- 공소청의 -----

----- 소속공소청
보관 또는 공소청외 -----
-----.

③-----

----- 공소청의
검사에게 사건-----

----- 원공소청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

----- 공소청-----

-----.

제62조(기소중지처분 · 참고인 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검사는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동법 제133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소시효 완성전이라도 압수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압수물을 사진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66조(사건종결 전 폐기) ①제29조·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0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에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8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 처분지휘)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219조 단서에 따라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물처분

②-----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3조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사건종결 전 폐기) ①-----

-----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30조제2항·제3항에 준하여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 처분 의견제시) ① -----

-- 제219조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지휘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사건 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 또는 같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하면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 압수물처분지휘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장 검찰청외 보관 증거물

제70조(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 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 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1조(압수물의 보관위탁) ①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사법경찰관의 압수물처분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

-----.

② -----

----- 재수사요구를 -----

-----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보류할 -----.

제5장 공소청외 보관 증거물

제70조(압수물의 다른 공소청 보관 이송사건) -----
--- 공소청의 -----
----- 공소청 또는 -----

-----.

제71조(압수물의 보관위탁) ① ----- 제219조 및 제130조
제1항에 준하여 -----

따라 압수물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보관위탁의 뜻을 기재한 후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을 제출받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72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그 보관상태를 확인하여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2. 제68조제2항에 따른 압수물 처분지휘 보류로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이 반환된 경우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압수물 처분에 관한 의견제시 -----

② -----

하여금 제69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 이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
다.

제75조(촉탁수리) ①다른 검찰청
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
탁받은 검찰청소속의 압수물 사
무담당직원은 공조사건부에 정
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촉탁검찰청
에 이를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
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촉탁받은 뜻을 기재한 후 소속
검찰청의 압수물 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소속검찰청 또
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중인 압
수물에 관한 처분촉탁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촉탁
검찰청으로부터 처분결과의 회

----- 공소청 -----

--.

제75조(촉탁수리) ①--- 공소청
의 -----

----- 공소청소속-----

----- 촉탁공소청
-----.

----- 소속
공소청-----
-----.

②----- 소속공소청 ---

-----.

③----- 촉탁공
소청-----

답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
1호의2서식에 따라 촉탁결과를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
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76조(환부수탁) ①다른 검찰청
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불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불능인
때에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피환부인이 다른 검찰청 관할
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그 검찰청 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송부)
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
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7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의 검사가 압수물의 송부를 받
은 때의 압수물의 수리 및 영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

-----.

제76조(환부수탁) ①---- 공소청

-----.
②----- 공소청 관할
구역-----
-- 공소청 검사-----
-----.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

----- 공소청 -----

-----.

제79조(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
----- 공소청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①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압수물을 소속검찰청에서 처분하거나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송부받지 아니한 압수물은 사건기록 반환서에 의하여 처분을 지시하거나 이를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압수물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압수표등의 정리보관) ① ~ ④ (생략)

⑤각급 검찰청의 장은 압수물 사무담당직원 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의 이동에 따른 압수물·압수표·압수물대장등에 관한 인계인수부를 비치·관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3조(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

-----.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①----- 공소청의 검사는 -----
----- 소속공소청-----
----- 공소청의 검사에게 -----.

②-----
----- 공소청-----
-----.

제82조(압수표등의 정리보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소청-----

-----.

제83조(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

보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환가
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
의 보관 및 처리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영치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영치 및 보관금에
관한 업무량이 적은 검찰청 또
는 지청에서는 일일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제84조(압수물 현황조사보고)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관할 검찰청 및 지
청에 대하여 압수물과 이에 관
한 관계장부를 조사하여 그 결
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상급 검찰
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특별절차) 지방검찰청의 장은
관할 본청 또는 지청이 압수물
에 관한 업무량이 적거나 직원
수의 과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고) -----

----- 소속공소청-----

--. -----
----- 공소청 -----

-----.

제84조(압수물 현황조사보고) ①-
--- 공소청-----

----- 공소청 -----

-----.

②----- 공소청-----
----- 공소
청-----.

제85조(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특별절차) 지방공소청장-----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절차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고등검찰청의 장과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내사사건등의 압수물 처리) 내사·진정·수사·시정·변사·항고·재항고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지방공소청장은 소
속 광역공소청장-----
-----.

제86조(진정사건등의 압수물 처리) 진정·시정-----

-----.